

64년 언론윤리위법파동

4·19혁명으로 수립된 張勉정권을 5·16군사혁명으로 전복한 朴正淸은 정정법(政淨法)으로 구정치인들을 제거하고 가장 큰 비판세력인 언론에 대한 통제에 주력했다. 그래서 언론계가 설치한 신문윤리위(이하 윤리위라 함)를 없애고 대신 관제 「언론윤리위원회」(이하 관제윤리위라 함)를 설치, 언론을 규제 하려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이하 언론윤리법이라 함)을 전격적으로 제정했다.

이같은 처사에 정면대결한 언론계와 정부간의 38일간에 걸친 싸움은 치열했고 세계언론인들의 중대 관심사가 됐다. 이 사건은 자유당정권 말기에 언론탄압 수단으로 미군정법령 88호를 원용, 경향신문을 정·폐간했던 사건과 또 다른 특성을 지닌 한국언론사상 비중이 큰 역사적 사건이었다.

1) 4·19 후의 언론계 자율정화

4월혁명으로 언론통제가 풀리자 수많은 신문, 통신, 주간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속출했고, 사이비언론의 횡포가 컸다. 이에 언론계의 핵심단체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60년 6월 8일 언론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응책을 강구했다. 우선 정화방안의 하나로 언론에 부여된 특전을 노려 횡행하는 사이비 언론기관의 정비와 부정 언론인의

방지 및 제거를 위해서 △신문·통신사의 군(軍) 대여 차량의 전면 반환 △각사 단위로 발급 받은 무임 철도 승차권의 반납 △기존 신문·통신사의 지사·지국, 무급기자 일소와 본사 발급 기자증 이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결정, 시행했다. 그러나 새로 발행되는 신문·통신의 기자들은 편협 또는 발협(發協) 회원도 아니어서 속수무책이었다.

때마침 한국의 4·19를 전후하여 학생혁명으로 탄생한 터키정부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위해 IPI의 지원을 얻어 신문명예재판소를 설치,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힌트를 얻은 한국 언론계도 언론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인정, 편협은 61년 4월 15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가칭 「신문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고, 그 준칙이 될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비하고 있었다.

2) 5·16군사혁명과 윤리위의 설치운영

그런데 언론자유를 누리며 자율규제를 준비 중이던 언론계는 5·16군사혁명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검열을 받았고 일간신문, 통신, 주간지는 4·19 이전 상태로 정비되었다. 사이버 언론인은 물론, 많은 언론인들이 투옥되었다. 이 같은 상황급변에 대처하여 군정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편협은 7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 온 윤리위회칙과 실천요강을 채택, 9월 12일 신문윤리위를 설치했다.

초대 위원장에 김세완(金世玩) 전 대법관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언론계대표 우승규(禹昇圭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관구(李寬求 서울일일신문 사장) 장기영(張基榮 한국일보 사장) 홍종인(洪鍾仁 조선일보 주필) 정종식(鄭宗植 경향신문 기자) 등 5인, 공중대표로 김증한(金曾漢 서울대 법대교수) 김재준(金在俊 한국신학대 학장) 한무숙(韓戊淑 작가) 등 3인을 위촉하고 초대 사무국장에 김용구(金容九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를 임명했다.

윤리위는 64년 3월까지 2년반동안 81차의 회의를 갖고 제소 27건을 처리했다. 신문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중 경고 6건, 주의 3건, 정정 5건, 해명 4건, 취소사과 3건, 중재취하 3건, 취하 1건, 기각 2건이었다. 윤리위는 제소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일반의 신임이 크고, 언론계에서는 필화사건도 처리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필화사건 구속자가 늘자 언론계는 크게 실망했다. 동아일보 사설(62. 8. 2)로 고재욱(高在旭)주필이, 한국일보 사회노동당 기사로 장기영(張基榮)사장이 구속되자(62. 11. 29) 윤리위는 이 사건을 윤리위에의 회부를 요구했지만 당국은 응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윤리위는 당국의 윤리위에 대한 정책해명을 요청했다.

정부는 약 6개월 후에야 비공식이나마 윤리위 강화안으로 △언론인 5인, 비언론인 4인을, 언론인 5인, 비언론인 6인으로 바꾸고, 입법, 행정부 대표 각 1인씩 추가할 것 △제소 당시 사직당국에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변경, 윤리위에 계류 중 일 동안만 유효하고 윤리위 결정에 불복일 때는 언제든지 사직당국에 고소·고발할 수 있게 하며 △윤리위 결정에 소수의견도 표시하고 심의기간을 1주일 내로 하며, 특히 계속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1주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이를 검토한 편협은 63년 8월 29일 △윤리위 구성상 언론계의 자주성을 뜻하는 과반수이상 원칙이 변질되고 △행정, 입법부 대표 참여로 자율성이 변질되며 △윤리위결정에 불만일 경우, 언제든지 사직당국에 고소·고발할 수 있을 경우, 이중제소를 가능케 한다 하여 반대했다. 그 대신에 윤리위는 행정부 대표로서 위원은 아니나 공보부차관을 업저버로 위촉하되 △발언권은 인정한다 △의결권은 없다 △안건은 위원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다△ 회의소집도 요청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타결했다. 그리하여 당시의 고영보(高榮輔) 공보부차관이 윤리위회의에 참석하는 등 윤리위 개편 문제는 일단락 된 듯 했다.

3) 6·3사태와 언론법의 처리

(1) 계엄하 언론윤리위법 추진과 반발

새로 출범한 박 정권은 63년 12월 12일 신문·통신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규 언론기관의 등장을 억제하는 한편 언론규제를 서둘렀다. 우선 박 대통령은 64년 1월 연두교서에서 「신문윤리위 기능을 조장하고 언론의 자율 규훈(規訓)」을 촉구했다. 그런데 한일회담 반대 학생데모가 격화하자 박 대통령은 5월 2일 정국혼란의 책임이 일부 정치인의 언동과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에 있다고 경고했다가 6월 3일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보도의 검열과 많은 언론인들을 구속했다. 이같은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편협과 발협(發協)은 6월 10일 「시국수습선언」을 발표, 학생데모의 난동화는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며, 그 가치판단에 있어 「언론도 절제를 잃은 사례가 없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같은 언론계의 언질을 기화로 박정권은 계엄하에서 언론통제 계획을 서둘렀다.

64년 6월 23일 오전, 각의에서 「계엄법개정안」(경비계엄하에서도 언론을 검열, 규제할 수 있다는 언론규제조항삽입)을 의결했다. 이에 편협은 24일 운영, 보도자유, 회원심사의 3개분과위원회를 소집, 연석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이송된 후 국회에 청원서를 내는 한편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국회의 통과를 막도록 하며, △ 그 준비를 회장단에 위임하기도 한다고 결의했다. 회장단은 그 청원서를 작성, 국회통과 저지공작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6월 30일에는 또 정부와 공화당에서 공안유지를 목적으로 「과괴행위방지법」(일명 언론규제법이라고 했음)을 성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편협은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유위를 소집, 토의한 끝에 공안유지를 위한 법인데 그 속에 다 언론을 규제하는 조항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대건의문을 작성했다. 7월 4일, 편협은 반대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공보부장관, 국회의장, 국회법사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공화당의장, 민주당대표, 민주당총재, 자민당대표 및 각 정당의 원내 총무단 등에게 각각 전달했다. 한편 7월 14일에는 고재욱(高

在旭) 편집회장, 최석채(崔錫采) 부회장, 강영수(姜永壽) 운영위원장, 민재정(閔載禎) 보도자유위원장, 정현준(鄭顯準) 회원심사위원장, 박홍서(朴鴻緒) 총무 등 6인의 대표가 의장공관으로 이효상(李孝祥)국회의장을 방문, 언론규제 입법의 반대와 언론계가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15일에는 崔錫采 부회장, 姜永壽 운영위원장, 閔載禎 보도자유위원장, 鄭顯準 회원심사위원장, 朴鴻緒총무 등 5인의 대표가 공화당 당무위원, 원내총무단 국회법사위원장 등과 회동, 언론규제를 위한 입법의 부당성과 자율적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편협의 노력과 주장에 대해서 공화당측도 찬의를 표명하고 언론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언론을 규제하지 않은 좋은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어서 대표단은 삼민회(三民會), 민정당 등 원내총무들을 각각 방문하고 언론규제입법의 부당성을 역설, 의견 교환 끝에 언론규제입법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또 17일에는 崔錫采 부회장이 이수영(李壽榮) 공보부장관과 만나 회동한 끝에 李장관으로부터 여야협상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언론자율규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 여야, 언론규제 입법내용 공동발표

7월 18일 국회는 여야시국수습회의를 열고 언론규제 원칙에 합의하고 입법협상을 시작했다. 이에 대처, 편협도 자율규제강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시국수습회의는 언론계의 제언을 묵살한채 7개항의 언론규제입법 내용을 공동발표했다.

- △ 언론자율규제강화를 위한 윤리위 설치.
- △ 신문, 통신, 잡지, 방송의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윤리위원이 됨.
- △ 윤리요강의 제정 및 공포의 의무화.
- △ 윤리 상설기구로 심의회를 두고 언론인은 과반수로, 의장은 비언론인이 됨.

- △ 심의회는 문제된 언론내용을 판정하고, 모든 언론기관은 공포의무를 진다.
- △ 판정요구는 피해자와 중대 윤리 위반사항은 언론소관 장관이 할 수 있고, 판정불복 때 피해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 판정에 불복할 때의 제재방법을 강구한다.

이상의 여야협상 협의사항이 발표되자 언론대책위는 「타율적 규제를 배제하고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발표했다.

- △ 윤리위는 언론인 7인, 비언론인 6인(국회의원 2명 증원)으로 한다.
- △ 윤리위에 심의실을 부설, 신문·통신기사를 매일 심의한다.
- △ 정부에 필화혐의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관행을 요청한다.
- △ 윤리위 경비는 발협(發協), 통협(通協), 편협 대표기구에서 부담한다.
- △ 윤리위에 지원하는 신문, 통신사 찬조금은 발협 통협에서 일괄 취급한다.

편협은 7월 20일 회장단(위원장단 포함) 간담회를 열고 자율적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언론관계 5개단체 대표자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협의하고 즉시 발행인협회, 통신협회, 윤리위원회, IPI국내위원회 대표들과 협의 연락하여 22일에 각단체에서 5인씩의 대표가 회합을 갖도록 합의를 보게 돼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표로 高在旭(회장) 崔錫采(부회장) 姜永壽(운영위원장) 閔載禎(보도자유위원장) 鄭顯準(회원심사위원장) 5명을 선정했다.

7월 22일에 열린 5개 단체 대표자회의에서는 언론자율규제문제를 논의한 끝에 각 단체에서 2인씩의 대표와 신문연구소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여 『언론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4일에 소집된 첫 언론규제대책위원회에서는 언론자율규제방안을 논의한 끝에 현 신문윤리위원회를 강화시킬 것에 합의하고 동위원회의 『기구설치의 자율성』 및 『결정 사항 실행의 자율성』 등에 관한 안을 제1분위에서, 『동 기구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안을 제2분위에서 각각 검토 입안할 것을 결정하고 제1분위는 최석채(崔錫采) 김규환(金圭煥) 김종규(金鍾圭) 박권상(朴權相) 최준(崔竣) 5명, 제2분위는 고재욱(高在旭) 김남중(金南中) 최기섭(崔基涉) 3명을 각각 선출했으며, 제1분위는 25일에 첫 회합을 갖고 신문윤리위원회강화방안(기구설치의 자율성 및 결정사항실행의 자율성)을 성안했으며 제2분위는 27일에 신문윤리위원회강화방안(동기구 운영의 자율성)을 성안하여 이날 언론규제 대책위원회에서는 전기 제1, 제2분위 안을 검토하고 『신문윤리위원회 강화방안』을 만들어 이를 공표했다.

7월 30일 언론단체 대표자회의에서는 언론규제대책위원회의 『신문윤리위원회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를 채택하였으며 또한 이날 편협임원총회는 5개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한 『윤리위원회강화방안』을 원칙적으로 받아 들였다.

한편 언론규제대책위원회는 31일 『공화당이 제안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끝까지 이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장에게 공개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율규제방안(신문윤리위원회 강화방안)을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공화당 원내총무단, 민정당 원내총무단, 삼민회 총무단과 공보부장관에게 각각 전달했으며 8월 1일에는 동법안의 폐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상과 같이 언론계의 입법 반대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여야협상합의를 빙자하여 전문 20조의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대책위는 이 법안을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으로 규정,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청회와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한편, 이 법안은 언론자율규제 원칙과 상반되는 완전한 타율적 규제법이며 언론자유 본질적 내용을 헌법규정과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써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언론, 법조, 민정당의 반대에도 8월 2일 야간국회는 삼민회의 수정안대로 재석 149명 중 가 96, 기권 53표로 전격 통과시켰다. 8월 5일 정부는 이 법을 공포와 더불어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朴정권의 언론규제 입법은 예정대로 제정되었다.

4) 언론계의 거센 악법철폐투쟁

(1) 언론법철폐투쟁위원회의 결성

국회에서 언론법이 채택되자, 대책위는 언론법 시행 저지투쟁을 결의, 편협은 「위헌적인 악법」으로 규정, 철폐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미 국무성은 이 법이 「민주발전에 저해」될 것이라 성명했다. 당초 대책위는 「언론규제법 철폐추진위원회」로 했다가 8월 5일 임시 국무회의가 이 법의 시행을 공포하자 「언론법철폐투쟁위원회」로 개칭했다.

언론법철폐투위는 위원장에 유봉영(劉鳳榮 조선일보 주필), 부위원장에 고재욱(高在旭 동아일보 주필·편협회장), 홍종인(洪鍾仁 신문연구소장), 김남중(金南中 전남일보 사장·발협 이사)을 선출했다. 투쟁대책을 강구할 실행위원으로 방우영(方又榮 조선일보사장·발협 이사), 김종규(金鍾圭 한국일보 사장·발협 이사), 최석채(崔錫采 편협부회장·조선일보 논설위원), 정현준(鄭顯準 편협심사위원장·한국일보 논설위원), 최기섭(崔基涉 동양통신이사, 통협 이사장), 한격만(韓格晩 윤리위원장·변협 대표), 김광섭(金光涉 합동통신 편집국장·윤리위원), 이환의(李桓儀 경향신문기자), 이용희(李雄熙 동아일보기자), 이수열(李壽烈 라디오서울), 김규환(金圭煥 동양통신 편집부국장 IPI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김형익(金衡翼 의사신보 사장·주간신평 대표), 김명엽(金命燁 잡지협 대표), 총무간사 박홍서(朴鴻緒 시사통신 편집국장·편협 사무국장), 선전간사 엄기형(嚴基衡 윤리위 사무국장) 등 17명을 선출했다. 그 뒤 3차회의는 조규호(曹圭鎬 서울신문 편집국장), 강영수(姜永壽 대한일보 주필), 장기봉(張基鳳 동화통신 편집국장), 정태연(鄭泰演 한국일보 기자), 윤박(尹博 문화방송 기자), 송영신(宋永信 동양통신 기자) 등 6명을 보강했고 4차회의는 기자단 공동투쟁협의회 대표인 김영수(金榮洙 동아일보 기자), 송기오(宋基五 조선일보 기자)를 실행위원으로 추가했다. 또 투위는 투쟁 방안으로써 ① 8월 10일 전국 언론인대회 개최 ② 각급 기자단과의 연계투쟁 ③ 언론법철폐요구 성명발표 ④ 발협(發協)의 언론윤리위원회(이하 관제 윤위라 함) 소집저지 등을 결의했다.

한편 국회 및 각 부처 출입기자단은 정부와의 일체 협조거부를 선언, 24시간 취

재 중지를 결행했다. 전국 30여 지구의 일선 기자단도 투위 결의를 지지했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성명했다.

(2) 8·10 언론인대회와 투쟁의 격화

투쟁위 결정대로 8월 10일 신문회관에서 언론인대표 5백여명이 모인 전국언론인대회는 언론의 자율규제를 배격하는 선언문, 투쟁방침을 밝히는 결의문, 대통령·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회선언문 요지

『자유는 천부의 인권이며, 특히 언론자유는 「제1의 자유」라 한다. … 이제 집권자들은 언론법이라는 악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려 한다. … 언론법은 언론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실은 법의 규범으로써 언론을 규제하려 한다. 언론이 일반법에 저촉되었을 때 그 책임을 면해 본 예도 없거니와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강조하여 신문윤리위를 설치하고 그 자율규제 강화를 기약하고 있다. 명분없는 악법으로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삼고 자유를 질식케 하려는 책동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에 대한 죄과는 길이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경고한다. … 우리의 행동에 대의가 있으며 우리는 사필귀정을 확신한다』.

대회결의문 요지

대회는 언론법 철폐를 요구하며 다음 제1단계 방법을 결의한다.

- △ 관제 윤리위 발족, 구성의 비협력과 심의에 대표파견 거부.
- △ 첫 회의 소집에 발협의 거부를 다짐한다.
- △ 관제 윤리위의 설립 협력자를 사이버언론인으로 규정한다.
- △ 변협(辯協), 상의(商議)의 심의회 대표파견 거부를 호소한다.
- △ 각계 인사의 심의회 참석거부를 호소한다.
- △ 악법 철폐까지 정부의 일방적 PR성 보도는 일체 거부한다.

- △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위 강화안을 계속 추진한다.
- △ 투쟁과정에서 발행할지 모를 어떤 장해도 공동책임으로 대처한다.
- △ 입법부는 악법철폐에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

건의문 요지

언론윤리법은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므로 철폐하라.

첫째, 이 법은 헌법 18조 1항의 기본정신에 저촉되고, 이 법 23조 2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이 법 24조 1항과 달리 법관아닌 자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사법권의 침해이며 위헌이다.

둘째, 이 법은 심의과정에 의회정치의 규범에 위배되는 입법과정을 통했다.

셋째, 법의 개념과 도덕률의 개념은 구별돼야 한다. 언론윤리위는 법영역 외에서 작성된 강령·기준을 규범으로 삼아 형벌을 과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된다.

따라서 이 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실추케 한다. 조속히 철폐하고 기존 윤리위의 보강방안 채택을 바란다.

대회 당일 일본신문협회는 한국언론인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한다는 전문을 보내왔고, 전국 주요도시에서 지역언론 투위가 결성되고 있었다.

정부는 언론법철폐투쟁에 맞서 관영방송, TV를 통해 법 해설과 영화 「책임있는 언론」을 각 극장에서 상영, 학생데모, 사회불안이 언론의 책임인양, 왜곡선전했다. 투위실행위는 영화상영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대회결의에 따라 △ 국가적 행사는 보도하되 경축사는 보도하지 않는다 △ 정부행사와 장관식사는 보도하지 않는다 △ 기타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거부도 불사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문은 8·15행사 때 대통령 경축사와 공보부장관의 「언론법 시행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도 취재 거부기로 했다. 정부는 할 수 없이 서울신문에 유료광고로 신게 했다.

(3) 한국기자협회 결성과 투쟁 역점

한편 조직적인 언론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한 전국 기자대표들은 신문회관(8·17)에 모여 한국기자협회를 결성했다. 초대 회장에 이강현(李綱鉉 동아일보), 부회장에 최근영(崔謹泳 대한일보), 조동오(趙東午 한국일보), 송두빈(宋斗彬 동화통신) 기자를 선출했다. 기협(記協)은 「우리는 언론자유 수호와 민주발전에 용기와 지혜를 집중」 하고 「정의와 책임에 바탕을 둔 단결된 힘은 어떠한 권력, 위력(威力)에도 굴치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품위유지를 위한 「적정한 제조건」의 조성에 힘쓰고, 윤리위가 채택한 강령, 요강의 준수와 보강책을 강구하며,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 등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한편 윤리위(8·23)는 언론투쟁에 호응하여 윤리위보강안에 따른 회칙개정안을 의결, 편협과 통협(通協)의 인준을 얻어 확정했다.

5) 정부의 강행방침과 국민적 저항의 확산

(1) 정부의 압력과 일부 신문 통신사의 투위 이탈

언론인대회의 결의에 따른 대통령 경축사와 공보부장관담화문 게재거부 실행은 정부측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측은 반격에 나섰다. 우선 한국일보, 서울경제, 코리아타임스, 서울신문 등은 8월 17일 언론인대회결의 6항 중 정부 PR의 한계선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쟁위 이탈을 선언했다. 뒤이어 코리아리퍼블릭, 일요신문, 서울문화방송도 이탈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8월 19일 발협(發協) 이사회(회장 金如源 서울신문사장)는 8월 28일까지 언론윤리법부칙에 따른 언론윤리위원회의 소집여부를 서면결의기로 결정했다. 이로부터 정부에 협력하는 일부 발행인과 투위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해 갔다.

편협(8·20)은 19일의 발협 이사회 결의에 유감을 표하고 발행인은 중대 시점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결연한 태도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발행인들에

대한 정부의 압력과 공작은 날로 가중되어 갔다.

발협의 서면결의를 앞둔 27일, 편협은 거듭 △ 관제 윤리위소집이 발협서 거부될 것 △ 발행인들은 정부압력에 굴치말 것 △ 편집인들은 발행인들의 결정여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언론자유수호를 맹세한다는 성명을 냈다.

8월 28일, 발협서면결의를 취합한 결과 찬성 21, 반대 4(동아, 조선, 경향, 매일신문), 기권 1(대한)로 나타났다. 이 결의에 따라서 찬성 21개사 때문에 9월 10일의 관제 윤리위소집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비, 서울신문 사옥 안에 사무요원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발협 서면결의 결과가 알려지자 기협은 8월 29일 그동안의 정부공작상황과 일부 발행인의 처사를 폭로, 비판하는 거센 성명을 발표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 △ 일부 발행인들의 이해와 바터하려는 관제 윤리위구성공작 처사를 개탄한다.
- △ 정부는 위협, 회유 등으로 일부 발행인을 이용하고 경찰간부까지 동원하고 있다.
- △ 모 일간지 사주는 현 관직을 남용, 발행인들의 윤리위구성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 △ 26일 밤 대전의 일부 발행인회합, 그리고 27, 28일, 서린호텔, 장원의 일부 발행인, 당국자 회동에서 오고간 묵계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
- △ 일부 발행인이 용자를 교섭하면서 언론법 중의 발행인 처벌규정 삭제 또는 완화를 요청, 그들의 구명책에 급급하는 처사에 기자들은 분노한다.
- △ 정부처사와 일부 발행인의 행위는 후일 언론사에 명기될 것이다.
- △ 어떠한 압제와도 싸울 결의이며 국민의 협조를 호소한다.

이 기협성명은 언론계는 물론 온 국민들을 격분케 했다. 이탈한 한국일보, 서울경제, 코리아타임스 기자일동은 투쟁대열의 동참을 선언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발행인이 정부압력에 굴할 경우, 총파업과 총사퇴할 것을 결의했다. 시내 10개 종합 대학신문들도 악법철폐투쟁에 동참을 선언했다. 투위는 기자들에 가해질 압력을 고려하여 발행인의 이탈은 개인자격으로 인정하며 해당 신문사 소속 편집인, 기자는 구속

받지 않고, 참가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투위는 정부압력으로 일부 신문, 방송이 이탈함에 따라 회의소집이 불가능해지자 정, 부위원장과 최석채(崔錫采 편집대표), 김규환(金圭煥 IPI대표), 김광섭(金光涉 시내 편집국장대표), 이강현(李綱鉉 기협대표), 이환의(李桓儀), 박홍서(朴鴻緒 간사), 엄기형(嚴基衡 간사)씨 등 11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 투위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이 위원회가 말하자면 악법반대투쟁의 지휘본부였다. 상위는 매일 윤리위원회실에 모여 투쟁방법을 숙의했고, 이때부터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2) 정부의 보복 조치와 비등한 내외여론

그런데 발협이 서면결의로 반대 4사가 확인되자 임시 국무회의(8·31)는 반대 신문사와 언론인에 대한 정부특혜 또는 협조를 배제하는 보복 조치를 결정했다.

- △ 정부기관의 언론법 반대 신문의 구독중지.
- △ 정부광고의 의뢰중지.
- △ 용지배급, 용자제한.
- △ 해외특파원에 대한 환금조치 중단.
- △ 신문수송의 기피, 방조.
- △ 기자의 관가 출입금지·방조 취재원의 봉쇄.
- △ 야간통금, 특수지역의 출입금지 또는 기피.
- △ 신문인들의 사생활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원 배치.
- △ 신문의 정간 또는 폐간조치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은 보복내용이 발표되자 편협은 즉각, 정부처사는 일제하에서도 없었던 언론탄압이라고 지적,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동아, 조선, 경향, 매일 등 4사 편집국장은 9월 1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관제윤리위 소집을 위한 발협 찬반 서면결의 강요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4사에 대해 정부는 보복조치를 강행했다. 그 수법은 정부산하 각 기관에 대한 전면 신문 불매령 등 천인공노할 비인도적 조치 등 언론탄압일 뿐 아니라 이성을 상실한 처사이다. 우리는 자유언론을 위해 편협결정을 준수하고 기협(記協) 투쟁에 기대하며, 악법철폐를 위해 끝까지 분투할 것을 선언한다』.

투위는 9월 1일 편협, 기협과 공동명의로 언론법폐기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의 국제신문, 영남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기자들도 발행인의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악법철폐의 계속투쟁을 선언했다.

전국언론인들의 봉기와 때를 같이하여 정부보복조치에 분격한 이병린(李丙隣 변협회장), 함석헌(咸錫憲 종교계), 노진설(盧鎭堯 법조인), 장이욱(張利郁 교육계)씨 등은 「자유언론수호국민대회」 발기를 준비하고, 언론법에 찬성한 21사에 대해 그 의사표시 철회를 촉구했다. 150만 신도를 갖는 기독교연합회도 보복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보복조치가 전해지자 IPI 알판 르네우스 회장은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항의전문을 보냈다.

「정부권한으로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신문에 대해서 전단적(專斷的)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국의 새로운 언론법을 IPI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한다. 한국신문들이 책임있고, 정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음에 비추어 IPI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각별한 우려를 갖는 바이다. IPI는 정치성을 띤 언론법과 법적규제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려는 기교는 독재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 항상 쓰는 수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며 동시에 정부가 그와 같은 버릇을 멀리하고, 한국언론계에 완전한 자유를 회복시키기를 충심으로 희망한다」.

또한 정기국회 본회의는 연 2일째 대 정부질의를 통해서 특정신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신랄히 추궁했으며, 여야의원 모두 졸렬한 보복조치의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정부의 보복조치가 내외의 지탄대상이 되자 국무회의(9·4)는 결국 「언론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건」을 취소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법시행에 운영의 묘」 운운하며, 언론인들은 이 법 반대에 앞서 「법시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투쟁위 상위는 보복조치 철회는 환영하지만, 언론법도 즉시 철폐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6) 유성(儒城)회담과 언론법 시행 보류조치

(1) 투쟁위와 정부측과의 막후협상

정부와 언론과의 사이는 일촉즉발의 극한상태에 이르렀다. 정부의 보복조치가 발표되자 편협(編協)과 기협(記協)은 전국 언론인들의 총궐기의 태세에 들어갈 전략을 숙의하고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지자 정부는 이수영(李壽榮) 공보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지워 물러나게 하고 홍중철(洪鍾哲)씨가 새로 공보부장관에 취임했다. 정부는 국내외로 추락된 스스로의 위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임장관에게 사태수습을 하도록 했다.

9월 4일, 정부측은 때마침 IPI총회에 다녀 온 김성곤(金成坤 동양통신사장 공화당의원)이 유봉영(劉鳳榮) 투위위원장과 고재욱(高在旭) 부위원장등 3자가 회동, 언론법 과동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과 사태에 대해 걱정을 나누었다. 일설에 의하면 정부측이 兪 의원으로 하여금 투쟁위측의 흥중을 타진하는 등, 정부와 언론계의 중간 조정역을 부탁했다는 설도 있었음).

그런데 이날 오후 공개롭게 정부는 소위 「반대사에 대한 보복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급한 탓으로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해 갔다.

이날 밤 金成坤의원은 언론사 사장의 자격이었는지 아니면 IPI위원, 혹은 정치인의 자격이었는지 간에 청와대를 방문, 박대통령과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물론 정부와 언론의 대립, 그리고 언론의 투쟁에 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

이 뻔했다. 그런데 요담을 마치고 나온 金成坤의원으로부터 박대통령과의 면담 가운데서 언론계가 정부의 위신과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성의만 보여준다면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보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힌트를 얻었다는 면담의 소감이 편협의 투쟁위원회에 전달되어 왔다.

9월 6일, 金成坤의원은 언론계에서 劉鳳榮 투위위원장, 高在旭 부위원장, 정부측으로는 洪鍾哲 공보부장관, 이후락(李厚洛) 청와대비서실장 등의 회합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는 연락관계를 맡은 金圭煥(IPI대표)위원도 배석했다. 이 회동에서 「언론계가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할 터이니 정부는 언론윤리위원회법시행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정부에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각서를 갖고 언론계대표와 박대통령과 면담을 할 수 있게 주선하겠다」고 정부측이 제의해 왔다.

편협은 9월 7일 상위를 긴급소집, 정부측 제의를 제기했다. 이날 참석자는 劉鳳榮, 高在旭, 洪鍾仁 투위 정·부위원장, 崔錫采, 金圭煥, 金光涉 위원, 李鋼鉉, 李桓儀 두 記協 대표, 朴鴻緒, 嚴基衡 두 간사 등 10명이었다. 오전 회의는 시행 「보류」를 요청하는 「각서」제출 형식이 언론계 위신과 악법철폐주장 명분에 위배된다고 해서 격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이 문제는 상위에서 재론됐다.

오후 회의도 격론이 벌어져 일부대표가 퇴장했다. 쟁점은 첫째, 악법의 「철폐」 아닌 「보류」라는 용어를 투쟁위측이 먼저 쓸 수 있느냐는 점. 둘째, 「각서」는 아니나 「공동건의서」를 내고 회담성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언론계의 사기에 미칠 영향 등이었다. 그러나 원로들의 진지한 설득으로 우선 대통령과 면담키로 결정했다. 대표는 劉鳳榮위원장, 高在旭·洪鍾仁 등 부위원장, 崔錫采 상임위원(편협대표), 李桓儀위원(記協대표), 金圭煥(IPI사무국장) 등 6명을 선정했다. 정부측으로서는 洪鍾哲 공보부장관과 金成坤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다.

언론계 대표 등은 이날 밤 9시 야간 열차로 유성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는데 떠날 때까지에도 문면 내용의 용어문제로 건의서를 완성하지 못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문맥을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고, 유성 호텔에 도착, 밤을 새워 새벽 4시경에야

겨우 건의서를 완성했다. 그리고 박대통령과 대좌, 건의를 할 때 발언 설명할 사람은 崔錫采 편집대표와 李桓儀 記協대표로 정했다.

9월 8일 상오 9시, 유성 만년장(萬年莊) 호텔 201호실에서 투위 대표 6명은 박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崔錫采 편집대표는 △ 민주언론의 본질상 자율규제 방안이 있을 뿐, 언론윤리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우선 법시행의 보류조치를 취할 것 △ 기존 윤리위원회의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보강책을 마련, 이미 회칙도 개정했다. △ 보강된 자율적 윤리기구는 법에 의한 타율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사회 안정과 국익옹호의 입장에서 윤리위강령, 실천요강의 미흡점을 검토하겠다 △ 윤리위원회의 강화로 책임있고 공정한 언론이 이룩되도록 할 터이니, 언론발전을 위해 법의 시행을 보류하라는 등의 건의서 내용을 설명했다. 崔錫采 편집대표는 어디까지나 언론계의 자율규제에 맡겨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대통령은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언론관을 펴며 냉담했으나 대표들의 주장을 듣고 나더니 차츰 완화되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약 한 시간동안 회담했다. 대표들이 즉석에서 어떤 확약은 얻지 못했지만, 박대통령은 서울가서 선처하겠다 하고 회담은 끝났다. 이것이 이른바 악법 반대투쟁의 유성회담(儒城會談)이라고 칭한다.

(2) 언론법 시행보류와 윤리위의 강화

유성회담결과는 박대통령이 상경, 정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가 관계 윤리위 소집 하루를 앞둔 9월 9일, 언론법시행을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박대통령은 언론법의 취지가 언론의 자율적 책임강조에 있는 만큼 「언론인들 스스로 자율적 책임을 다할 결의가 있다면 언론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자율적 규제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는 담화를 내고 공보부장관에게 언론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劉鳳榮 투쟁위원장은 정부의 언론법 시행 전면보류를 환영, 이는 이

법의 철폐를 전제한 것임을 확신하며 언론인들은 언론자유수호와 자율규제강화에 한층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날 투쟁위는 해체성명에서 「투쟁위는 △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 38일간의 「역사적 투쟁」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 두 번 다시 이런 시련 없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 했다.

편협은 9월 1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심의실신설, 위원 4명 추가, 제재강화, 재정독립 등을 규정하는 회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회칙개정은 발협(發協)의 인준을 거쳤다. 이어 87차 회의(10·8)는 심의실장에 이한용(李漢鎔 전 중도일보주필)을 선임, 10월 20일 심의실을 발족시켰다. 이로써 사상 처음 신문·통신기사의 윤리강령, 실천요강에 저촉여부를 심의하는 자율규제 제도가 시행 됐다.

64언론법과동은 박정권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집념과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언론인들간의 역사적 대결이었다. 이 법은 박정권 집권 중에 여러 차례 철폐 청원이 있었지만 정부는 보도(寶刀)처럼 거머쥐고 언제든지 발동하려는 듯 존속시켰다. 이 법은 제3공화국이 끝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80. 12. 26)되면서 폐기되었다.